

### Ⅲ. 감사 결과

#### 1. 총괄

○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0건(처분내용 12건)의 위법·부당, 9건의 모범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인원)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원)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12	-	1	-	-	-	-	2	-	1 (1)	1	-	8	8	-	-	-	9	4

○ 각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조치기관	처분사항 종류	제목	비고
1	부안해경서	통보	■ 병역 휴직자 공무원증 관리 미흡	
2	부안해경서	통보의	■ 특수건강검진비 지급 절차 부적정	주의 1명
3	부안해경서	통보	■ 부안해양경찰서 구조대 대기근무 방법 미준수	
4	부안해경서	기관주의	■ 경비함정 정보보안 업무 규정 미준수	
5	부안해경서	통보	■ 파출소 임무지원정 운용 및 관리 미흡	
6	부안해경서	통보	■ 구속피의자 인권침해여부 실태조사(면담, 설문조사) 미흡	
7	서해지방청 부안해경서	개선	■ 수사민원사건 처리 관련 지방청 위임전결사항 개선 필요	
8	부안해경서	기관주의 통보	■ 견문평가 및 수사첩보 평가 부적절	
9	부안해경서	통보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운용 및 안전교육 미흡	
10	부안해경서	통보	■ 경비함정 전용부두 및 시설물 관리 소홀	

## 2. 감사내용 및 처분사항

### (1) 병역휴직자 공무원증 관리 미흡 (통보)

#### □ 판단기준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표 1]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무원증의 반납 사유

연번	내용	관리 부서
1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기획운영과
2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장비관리운영팀

자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재구성

####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026. 4. 20. ~ 4. 30) 중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로부터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부안서 병역 휴직자 현황 ('24 ~ '26년)

연번	계급	성명	부서명	병역휴직 기간	복직 일자	복무	공무원증 번호
1	순경	***	가파출소	'23. 8. 31. ~ '25. 5. 30.	'25. 5. 31.	사회복무요원	*****
2	순경	***	마정	'24. 1. 25. ~ '24. 3. 15.	'24. 3. 13.	사회복무요원	*****

자료: 부안서 기획운영과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 휴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 (2) 특수건강검진비 지급절차 부적정 (통보·주의)

### □ 판단기준

-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특수건강검진 예산은 운영비(수용비 210-01)로 편성되어 있어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1호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일 경우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해당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 제1항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026. 4. 20. ~ 4. 30) 중 최근 2년 간 특수건강검진 완료자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경구조대(구조·구급직별 등 특임경과) 근무자는 수색구조역량강화(경비구조과) 예산, 그 외 함정·파출소·상황실 및 유류바지 근무자는 복지역량강화(기획운영과)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였다.

#### 가. 협약(제안서 요청) 또는 계약 과정 미흡

‘24년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수색구조역량강화 및 복지역량강화 예산 집행에 있어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 지출관을 통한 지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5년 복지역량강화 예산을 활용한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계약이나 협약과정(제안서 요청) 없이 예산을 집행했으며,

#### 나. 관서운영경비 최고 지급액 범위 초과 집행

함정 근무자 106명, 교대 근무자(종합상황실, 수사·형사, 파출소) 81명, 유류바지 1명 등 총 188명의 건강검진비 38,174,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건당 지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14,298,000원과 (재)▲▲▲▲연구소 ▼▼분사무소에 23,876,000원을 관서운영경비(☆☆☆☆과 출납공무원)로 각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현장 근무자가 양질의 특수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선정 시 제안(협의)이나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은 향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과 출납공무원 (관련자). (주의)

(3) 부안해양경찰서 구조대 대기근무 방법 미준수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0조(근무지침) 제6항에 따라 경비구조과장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의 업무 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22:00시 부터 다음 날 06:00시 까지의 시간 중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3교대: 3시간 이상 / 2교대: 4시간 이상), 휴게 방법·시간·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 2025. 9. 29.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수색구조계) 주관 '2025년 하반기 구조·구급 현장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표]와 같이, 구조대 야간 취약 시간 상황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대기 근무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공문을 하달하였고, 이후 2025. 10. 31. 부안해양경찰서 구조대에서는 야간 대기근무 인원에 대한 근무 편성 방법에 대하여 2인 1조 편성 근무하는 것으로 자체 세부 지침을 수립하였다.

[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구조대 야간 대기근무 방법)

2025년 하반기 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시행문	행정사항(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안부서》「여수구조대」운영</li> <li>대 상 ————— 구조대 ————— 원도구조대 ————— 여수구조대</li> <li>원 수 ————— 9명 ————— 2명 ————— 2명</li> <li>* 부안부서 여수구조대 지방경찰 표창 1매 수여</li> <li>□ 행정 사항</li> <li>○ 《행정 수색구조과장》「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에 따라 상황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 인자 근무자 2인 1조 편성 강도 요청</li> <li>○ 《과 해양경찰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에 따라 유해 인자 상황 대응 체계 강화하여 유해 인자 노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li> <li>- 과 중장비구내 등 배정 예산 활용에 지 않도록 집행 철저</li> <li>- 관할해역 지형지물 측량 및 선측량 사고예방 조사를 위한 사고타방 대책 추진 이상(과·과관 과(하이강) 운영 철저</li> <li>- 구조대 주요 장비별 재조사 장비리온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예방 점검 및 정비 근무 교대서 인수인계 철저</li> </ul> </li> <li>○ 《여수해양경찰서장》 지방경찰 표창 대상자 1명 선정 후 25. 10. 1(수) 오후 17:00</li> </ul>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해양경찰서 구조대에서는 2026. 2. 23.부터 ~ 3. 19.까지(25일간) 야간 대기근무를 1인 1조로 편성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경비구조과장)은 구조대 야간 취약 시간대 상황 대응 공백 예방을 위하여 야간 대기근무 및 휴게시간 등 근무방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 (4) 경비함정 정보보안 업무 규정 미준수 (기관주의)

####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8조(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암호자재를 관리·운용 하는 각 기관의 장은 관리·운용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관리정책임자: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 / 운용 정책임자: 함·정장, 파출소장)하고 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9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 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경찰 암호자재 관리 가이드라인』 암호자재 인계인수 방법에 대하여 운용책임자(정장) 변경 시 정보보안담당과장이 확인하고, 실무자 변경 시 운용 정책임자(정장)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비밀의 파기) 제1항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제5항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파기'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4항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비밀 열람기록전)을 첨부하고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치하여 기록·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026. 4. 20. ~ 4. 30.) 중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보안업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에서는 2025. 2. 20. 인사 발령으로 인한 운용 정책임자(정장)가 변경되었음에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P-㉮㉮정에서는 2026. 2. 23. 인사 발령으로 인한 부책임자·실무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인계자(부책임자·실무자) 날인이 누락되어 인계·인수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 예고문 도래(파기) 비밀문서를 ㉮㉮정 1건, P-100정 2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P-㉮㉮정에서는 2026. 2. 23. 인사 발령으로 인한 분임보안 담당관(정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비밀문서 1건을 미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 경비구조과장, 장비관리운영팀장)은 경비합정 정보보안관리업무 규정(인계인수, 파기 등) 관련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안사고 예방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5) 파출소 임무지원정 운용 관리 미흡 (통보)

#### □ 판단기준

- 『파출소 임무지원정 운용 계획』 및 『임무지원정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임무지원정 운용부서는 이동배치 시 기상을 감안하여 주간 이동을 원칙으로 해상 이동경로, 소요시간 등 이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문제점

- 『파출소 임무지원정 운용 계획 알림』 및 『임무지원정 운용 지침』에 따르면 운용부서는 임무지원정 이동배치 시 기상 감안하여 주간 이동을 원칙으로 해상 이동 경로, 소요시간 등 이동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서 해양안전과로 공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무지원정 인수 및 인계 완료보고'만 실시하였으며, 임무지원정 운항 시 운용부서에서는 최소 3명 이상 운용자를 배치하여 그 중 운용책임자(경사 이상)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경사 이하 계급으로 구성하거나 3명 이하로 운용자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은 향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임무지원정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 **(6) 구속피의자 인권침해여부 실태조사(면담, 설문조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66조(구속피의자 인권침해여부 실태조사) 제1항에 따르면 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인권보호관(수사과장)은 구속피의자(의뢰입감자를 포함)가 송치되기 1일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관련서식에 따라 '인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및 '구속피의자 면담'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이 경우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다만, 설문조사와 면담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 문제점

- 이번 종합감사 기간(2026. 4. 20. ~ 4. 30.) 중 2024. 1월 ~ 2026. 4월까지 부안해양경찰서 구속피의자(의뢰입감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면담 4건 및 설문조사 6건을 생략하거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은 구속피의자(입감의뢰자) 발생 시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바라며, 동일 지적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주기적 점검 바랍니다. (통보)

## **(7) 수사민원사건 처리 관련 지방청 위임전결사항 개선 필요 (개선)**

### 판단기준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해양경찰청훈령)』 상에는 수사민원 사건 처리(고소·고발·진정·탄원) 중 중요사항은 국장(경무관급 이상) 결재, 일반사항은 과장(총경급 이상) 결재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 한편,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5조(수사지휘의 내용) 제3항에 따르면 '해양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에 관한 위임 전결 지침 (2021. 2. 3.시행)』에서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등이 'Ⅲ. 중요서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찰서 과장이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서 수사민원사건과 관련된 입건전조사 사건(범죄와 관련하여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서 과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문제점

○ 이번 종합감사 기간(2026. 4. 20. ~ 4. 30.) 중 부안해양경찰서 수사민원사건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 및 결과에 대한 결재권자를 확인해 본 바, 2024. 1. 1. ~ 2026. 3. 31.까지 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접수 및 처리된 수사민원사건은 총 27건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한 서류는 모두 수사과장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런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시행 중)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에는 '수사민원 사건'이라는 용어가 아닌 '형사민원사건 처리'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서 수사과장이 아닌 경찰서장이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원칙과 모순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위임전결사항) '별표 2'에 명시된 '형사민원 사건' 처리와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을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에 관한 위임 전결 지침』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조치사항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기획운영과장, 수사과장)은 수사민원사건 처리 관련 위임전결사항 및 지침 개정 필요성 등 검토 바랍니다. (개선)

## (8) 견문 및 수사첩보 평가 부적절 (기관주의·통보)

### □ 판단기준

- 『견문수집 및 처리 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조사자료'란 내용의 재확인 및 출처의 신빙성을 보장하여 정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견문, '무가치자료'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보고되는 자료 등 정보업무 수행에 사용가치가 없는 견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견문의 평가 및 분석 등)에 따라 각각 '조사', '무가치'로 평가권자가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2조(정의) '기록자료'란 수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 '참고자료'란 단순히 수사 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수사첩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8조(수사 첩보의 평가)에 따라 각각 '기록', '참고'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026. 4. 20. ~ 4. 30) 중 견문 및 수사첩보 수집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한 제목 및 내용의 견문이 제출되어 유가치(조사 또는 기록)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 동일 제목 및 내용의 견문 유가치(조사) 평가

'24년 ~ '26년 현재까지 부안해경서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이 제출한 견문 중 25건이 기 보고된 동일한 제목 및 내용으로 확인되어, '무가치' 등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조사'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나. 동일 수사첩보 유가치(기록) 평가

'24년 ~ '26년 현재까지 부안해경서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이 제출한 수사첩보 중 8건이 기 보고된 동일한 제목 및 내용으로 '기존 또는 타인이 제출한 첩보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반려' 또는 '참고'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기록'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 정보외사과장)은 관련부서(평가권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수집될 견문 및 수사첩보의 분석·평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향후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견문 및 수사첩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통보)

## (9)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운용 및 안전교육 미흡 (통보)

### □ 판단기준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4조(장비운용 및 안전교육)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대응장비 등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고대응장비 등 운용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026. 4. 20. ~ 4. 30) 중 부안서 해양오염방제과 주관 장비운용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소속직원 대상 사고대응장비 등 활용법에 대한 교육 및 보유 장비(구조대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파출소 및 구조대의 경우 팀별 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팀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현장부서 방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활용법 교육 실시 현황

연번	일자	대상 부서	목적	교육 여부	교육 내용
1	'24. 7. 25	㉠㉠ 파출소(C팀)	해상화학사고 대응 장비·자재 운용 실태 점검	X	-
2	'24. 7. 26	㉡㉡ 파출소(A팀)			
3	'24. 8. 7	㉢㉢정, P-㉣㉣정			
4	'24. 8. 8	P-㉤㉤정			
5	'24. 8. 9	P-㉥㉥정			
6	'24. 8. 13	㉦㉦정, P-㉧㉧정, P-㉨㉨정			
7	'24. 8. 14	㉩㉩함, ㉪㉪정		○	C급 보호복 사용 시 개방된 공간 외 사용불가 및 장비·자재 사용법 및 주의사항
8	'25. 6. 18	㉫㉫ 파출소(A팀)			
9	'25. 6. 20	㉬㉬대(A팀)			
10	'25. 6. 23	㉭㉭ 파출소(A팀)			
11	'25. 6. 25	㉮㉮정			
12	'25. 6. 30	㉯㉯ 파출소(A팀)			

자료: 부안서 해양오염방제과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오염방제과장)은 현장부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통보)

## (10) 경비함정 전용부두 및 시설물 관리 소홀 (통보)

### □ 판단기준

- 『부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종합관리 운용 지침』 제10조(시설물 관리)에 따르면 전용부두 및 바지의 시설물 관리의 주체는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부안서 전용부두 시설물 관리 부서

연번	내용	관리 부서
1	· 전용부두-바지26호정 부잔교 출입문 관리와 출입자 통제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기획운영과
2	· 바지, 잔교, 유류 및 청수 수·공급 시설, 전기 배전반·육전박스의 유지·보수	장비관리운영팀
3	· 방제물품경량화 참고	해양오염방제과
4	· 함정경량화 참고	함정장

자료: 부안서 「전용부두 종합관리 운용 지침」 재구성

### □ 문제점

- 이번 감사기간(2026. 4. 20. ~ 4. 30) 중 부안서 전용부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그림]과 같이 ①노후 및 사용불가 물품 방치, ②안전지지대 파손, ③폐기물 및 쓰레기 방치 등 전용부두(바지) 관리의 소홀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함정 승조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유류바지(B-26)에 세탁실을 마련하고 물품(세탁기 2대, 건조기 1대)을 구매하였음에도, 유류바지와 경비함정(P정)이 전용부두 간 접근성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부안서 전용부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자료: 종합감사 기간 중 전용부두 현장점검('26.4.22 ~ 4.23) 결과

### □ 조치사항

- 부안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 장비관리운영팀장)은 전용부두 종합관리 운용 지침에 따른 전용부두(바지) 관리 및 유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물품 유희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통보)